

변론 사건내용 홈페이지 게시

[2024헌라3]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제22대 국회의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에 보임된 자들임.
- 2024. 7. 9.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함)은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건(청원번호 2200009)’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종결하였고, 피청구인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는 청구인들이 퇴장한 가운데 ‘2.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3.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 ‘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한 뒤 가결 선포하였음.

○ 청구대상

1. 피청구인이 국회 교섭단체간 안건 상정여부 등에 대한 협의 없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및 소위원회 위원의 선임이 없는 상태에서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건(청원번호 2200009)’에 대해 상정하고 가결 선포한 행위
2. 피청구인이 위 제1항과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 내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상정을 강행한 행위
3. 피청구인이 국회 교섭단체간 안건 상정여부 등에 대한 협의 없이 ‘2.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3.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 ‘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상정하고 가결 선포한 행위

4. 피청구인이 위 제1항과 관련하여 청원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부작위

※ 위 내용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종국 결정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